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  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12. 5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286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영등포구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소식지 제작 참여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행복소식, 어린이, 시니어 등 각 소식지별로 운영되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 위원회 정원의 증원 (안 제7조제2항): 8인 이내 → 15명 이내
- 나. 위촉직 위원 자격에 편집 및 사진분야 전문가를 추가 신설함 (안 제7조제3항제3호)
- 다. 편집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 (안 제7조제4항)
- 라. 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(안 제9조)

마. 소식지 제작 참여에 따른 보상규정 신설 (안 제12조)

바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#### 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를 위해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과 소식지 제작 참여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- 안 제7조제2항에서 행복소식, 어린이, 시니어 등 각 소식지별로 운영되던 편집위원회를 통합하고자 위원회 위원 정원을 “8인 이내”에서 “15명 이내”로 증원 하였으며,
-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위촉직 위원 자격에 편집 및 사진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- 제7조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,

- 안 제9조에서 조의 제목을 “간사 등”에서 “편집위원회의 운영 등”으로 하고, 안 제9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“공보담당주사”에서 “홍보담당주사”로 변경하고,
- 안 제9조제3항에서 영등포행복소식 외 기타 소식지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 추가하였으며,
- 안 제9조제4항에서 위촉직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 추가하는 등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.
-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명예기자 위촉대상을 “구민 또는 공무원”에서 “구민, 영등포구 소재 직장인, 공무원”으로 확대하였으며,
- 안 제12조에서 조의 제목을 “위원수당 등”에서 “실비보상 등”으로 변경하였으며,
- 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경우 실비 보상 및 기념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보완하였으며,
- 안 제12조제2항에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음.
- 그 밖에 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7조제1항, 안 제7조

제2항, 안 제7조제4항, 안 제9조제1항, 안 제11조제3항, 안 제11조제4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,

-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시행시기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였음.

○ 검토결과, 영등포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,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실비보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---

## 1

## 지방자치법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  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12. 5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287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투표의 청구를 위한 서명부 등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주민투표 청구에 있어 필요한 주민투표청구서,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규정의 정비(안 제8조 ~ 제10조)

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(안 제1조 ~ 제6조, 안 제12조, 안 제13조, 안 제15조, 별지 제3호 서식, 별지 제4호 서식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과 관련하여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 - 안 제8조(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) 및 안 제9조(청구인서명부의 제출), 안 제10조(청구인서명부의 열람)의 내용 중에서 주민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며,
  -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제6조, 안 제12조부터 제13조, 안 제15조, 별지 제3호 서식, 별지 제4호 서식은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는 내용임.
- 검토결과,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, 법률의 위반소지를 없애고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개인정보 보호법

**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**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 <개정 2016.3.29., 2017.7.26.>

1. 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4.3.24., 2015.7.24.>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24.>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4., 2017.7.26.>

[본조신설 2013.8.6.]

## 2

##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6조(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)** ①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·생년월일·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0.>

**제7조(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)**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서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의 성명·주소 및 생년월일, 주민소환투표청구대상자·취지 및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,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일 수 있다. <개정 2015.12.30.>

**제8조(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)**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0.>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  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 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12. 5.

行 政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289호로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영등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이 연장된 사항을 반영하고,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의2)
- 나. 구의회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의 축소 (안 제5조)
- 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조항 삭제(안 제6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기금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사항을 반영하고,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 - 안 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, 이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제3항 규정에 “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,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”는 규정에 의한 것임.
  - 또한, 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제2항 규정을 반영하여, 안 제5조(기금의 운용계획)제3항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의 주요항목 변경이 가능한 지출금액의 범위를 10분의 5이하에서 10분의 2이하로 축소하였으며,
  -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6조제4항 규정을 삭제하였음.
- 검토결과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과 체육시설 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,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**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7.24.>

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7.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